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4

발의연월일: 2021. 3. 31.

발 의 자:위성곤·서삼석·이개호

김영진 • 이원택 • 맹성규

어기구 · 김승남 · 이용우

윤재갑 • 주철현 의원

(11일)

제안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 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안 제6조제 2항제3호)
-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 1)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부정 제출 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함(안 제6 4조 신설)
 -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설)
 -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안 제8조제4항 신설)
 -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 다.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
 - 1)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조의2 신설, 제60조)
- 라.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함 (안 제11조제1항)
- 마.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 바. 농지위원회 설치(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 사.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신설),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49조의2 신설), 위반시 과태료(거짓 신고 500만원, 미신고 300만원) 부과(안 제64조 신설)
- 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 자.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4조)
- 차.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금융기 관 등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 설)
- 카.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안 제57조)
- 타.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 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을 위반하여 농 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를 "제6조제2항제2호·제9호·제9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 리
-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

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구·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

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임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 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인정한 경우
-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 한 경우
-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을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

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수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로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

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 기관의 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 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따라 그 행정구역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을 받은 사람
-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 앞에 "제4절 농지대장"을 삽입한다.
- 제49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를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을 "농지대장

(農地臺帳)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농지원부에"를 "농지대장에"로, "농지원부 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농지원부부를"을 "농지대장을"로,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를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3 및 제4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를 "농지"로,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2의 제목 "(농지자료 통합관리)"를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

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일시사용신고를 하지"를 "일시사용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로 하고,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轉用)한 자
-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61조(종전의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종전의 제62조)제1항 중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을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말한다)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②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54조의2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3제2항, 제22조제 3항, 제31조의3, 제37조의3, 제54조, 제64조제1항제1호는 이 법 공 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제8조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64조제1항제2호, 제64조제2항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 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8조 및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
	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
	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u>을 말한다.</u>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략)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
<u>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u>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
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	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	
를 소유하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 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 영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 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을 위 반하여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 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 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 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① (현행과 같음)

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제7호·제9호·제9호 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 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 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 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서류를</u> 첨부하여 ---------. --- <u>제6조</u>제2항제2호 • 제7호・제9호・제9호의2 ----

-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 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 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 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 시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 • 영농거리
-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 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 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 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 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1

③ • ④ (생 략)

<신 설>

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8조제2 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8조제3항 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 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 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u>⑤</u>・<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1필 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제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처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구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인 경
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실
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해산명
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u>있다.</u>
]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 설>

5. ~ 6. (생략)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 제23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 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우

8. (생략)

② (생략)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 장을 말한다) • 군수 또는 구청 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 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7.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 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 지 아니한 경우
-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을 위반하여 부동산 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 우

② ~ ④ (생 략)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② (생 략) <신 설>

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 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 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 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 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 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 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수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
-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 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의 실태조사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 지 조사
 -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 에 대한 조사
 -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 ---- 제1항

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1 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 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신 설>

제1호에	따른	농업건	진흥지역	실
태조사				

- ③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 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3절 <u>농지원부</u> <신 설>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과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u>농지위원회</u>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
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
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
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
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따라 그 행
정구역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

<신 설>

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 하고 있는 사람
-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해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 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신 설>

<신 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지원</u>
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한다.

-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농지대장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	--------	-----	----

①-----

----- <u>농지대</u>

장(農地臺帳)을 -----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u>농지원부</u>를 작성·정 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 <u>농지</u>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 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 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u>농지원부에</u>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u>농지원부 파일</u> (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u>농지원부를</u>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u>농지원부</u>로 본다.
- ⑤ <u>농지원부</u>의 서식·작성·관 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
<u>다.</u>
<u>③</u>
<u>농지대장</u>
<u>④</u> <u>농지</u>
대장
 ⑤ <u>농지대장에</u>
⑤ <u>농지대장에</u>
<u>⑤</u> <u>농지대장에</u>
<u>⑤</u> <u>농지대장에</u>
<u>⑤</u> <u>농지대장에</u>
<u>⑤</u> <u>농지대장에</u> <u>농지대장 파일</u> -
<u> </u>
⑤ <u>농지대장에</u> <u>농지대장 파일</u> - <u>농지대장 파일</u> - <u>농지대장을</u> <u>농지대장</u>
<u> </u>
<u> </u>

<신 설>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 |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지원부를</u>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 다.

② (생략)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 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 차계약이 체결 · 변경 또는 해 제되는 경우
-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 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등의 교부) ①시·구·읍· 본 등의 교부) ①---------- 농지대장의 --------- 농지대장을 ----

② (현행과 같음)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시·</u>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 <u>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조사하게 할수 있다.

- 1. 농업법인
- 2. 농지의 위탁경영자
- 3. 농지의 임대인
- 4. 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

	<u>소속</u>
	<u>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u>
	장・군수・자치구구청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	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3 및 제4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
	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제	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
	ኦ ት) ①
	농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u><삭 제></u>
	<u><삭 제></u>
	<u> <삭 제></u>
	<u> </u>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삭 제>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	<삭 제>
<u>행자</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
	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
	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
	<u>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
	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4}\cdot\underline{5}$ (현행 제 2 항 및 제 3 항과
	같음)
<u><신 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
	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
<u><신 설></u>	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생 략)

<신 설>

<신 설>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 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 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 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 한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 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

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 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 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 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 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

벌금에 처한다.

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 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 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 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은 자

-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 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신 설>

<신 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 5년 ----의 징역 또는 <u>3천</u>만원 이하의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u>5천만원</u> -----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 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한 자

<신 설>

<신 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_	_	_	_	_	_	
						•

-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2. 제36조제1항---------- 일시사용허가를 받
 -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 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 를 위반한 자
 -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제61조 (생략)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 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2조 (현행 제61조와 같음)

제63조(이행강제금) ①-----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의 25---.

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

<신 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

 으로 한 자
-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 <u>짓으로 한 자</u>
- ②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 다.